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이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투자지원 대상산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상향조정 및 보조금 지급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투자지원 대상범위에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조항 신설(안 제23조의4)
- 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가능 (안 제26조제1항)
- 다. 보조금 지급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채권확보 조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위원의 특정 성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서 성비 균형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개의회고, 출석의원”을 “개의회(開議)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9조 중 “「구미시세감면조례」가”를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인원”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50억원까지”를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의1 및 제23조의2를 각각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중전의 제23조의1)제2항 중 “50억원까지”를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의3(중전의 제2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중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의2(제2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관광사업 투자지원

제23조의4(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사업완료일 또는 보조금을 최종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3년 이내”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한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2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제21조의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을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
<신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위촉위원의 특정 성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구미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단,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서 성비 균형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적위원 -----
-----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지방세 감면) -----

-----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상시 고용인원-----

-----.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1(관내 기존기업의 투자
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
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
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
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
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
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권이전기업에 대
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
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 50억원까
지 예산의 범위에서 -.

제23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
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

----- 50억원까지 예산
의 범위에서 -.

제23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중
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의2 관광사업 투자지원

제23조의4(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9호에

다른 관광사업으로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생략)

<신 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사업완료일 또는 보조금을 최종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

-----.

1. · 2. (생략)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 6. (생략) 7. <u>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u> 8. ~ 10. (생략) ② (생략)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① (생략) ② <u>제26조제2항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1조의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u>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3. ----- <u>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u> 4. ~ 6. (현행과 같음) 7. <u>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한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u>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6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2, 제23조의3에 따른 보조금----</u>.
---	---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1.>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본조신설 2009.5.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5.29.>]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큰 관광사업이 정부 경제혁신 계획에 반영됨으로 이에 따른 우리시의 투자지원 대상산업을 관광 산업까지 확대하고,
- 5단지의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한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업의 투자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내재된 성장잠재력, 시장의 개화시기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거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먹거리가 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 분야에 집중투자 됨으로 투자계획을 사전에 판단하여 비용 추계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음

4. 작성자

투자통상과 투자유치계장 지영목 (☎480-6121)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보 신미정 (☎480-6122)

소관 실·과		투자통상과
입 안 자	과 장	김 홍 태
	담 당	지 영 목
	담 당 자	신 미 정 (480-6122)